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방유봉 의원 외 29명)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방유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7
----------	-----

발의연월일 : 2020. 8. 14.

발 의 자 : 방유봉 · 배한철 · 도기욱
박정현 · 김하수 · 황병직
남용대 · 박태춘 · 박채아
나기보 · 박영환 · 윤창욱
김상조 · 이수경 · 배진석
박용선 · 이종열 · 오세혁
이춘우 · 고우현 · 윤승오
권광택 · 박권현 · 남진복
홍정근 · 박판수 · 이철구
정영길 · 박영서 · 한창화
의원(30명)

1. 제정이유

- 생태계의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양봉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밀원식물의 조성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양봉산업 관련단체의 육성 등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 : 붙임

나.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해당부서 검토의견 : 붙임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발의의원 서명부 : 붙임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양봉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밀원식물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꿀벌의 병해충 방제와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7. 양봉 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와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단체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
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
12.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꿀벌 신품종 육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권리확보 및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별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营业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농가의 육성·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농가로 하여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양봉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의 설립) ①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꿀벌 및 양봉의 산물·부산물 생산 및 유통 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관련부서 협의

1 법제심사 (법무혁신담당관)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건
법무혁신담당관	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안은 2020. 8. 28. 시행 예정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례안 내용의 대부분이 아래와 같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자치법규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2 규제심사 (법무혁신담당관)

-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황 지 훈
입안주무부서	정책기획관	통 보 (조 치) 일	2020. 8. 3.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체크리스트(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검토의견 (축산정책과)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축산정책과	제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연구 및 기술 개발)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등)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제8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신설	○ 검토의견 : 삭제 ○ 사 유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양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인력양성이 타당 ○ 검토의견 : 삭제 ○ 사 유 :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 ○ 검토의견 : 검토대상 아님 ○ 사 유 : 산림조성 담당부서 업무 ○ 검토의견 : 삭제 ○ 사 유 : 지역별로 면역력, 질병 등이 달라 국내로 한정 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 ○ 검토의견 : 각 호 신설추가 <추가 내용> 6. 꿀벌의 병해충 방제와 생태 환경 보호에 관한 사업 7. 양봉 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와 교육 ○ 사 유 : 양봉분야 지원대상 확대 필요 ○ 검토의견 : 신설추가 <신설 조항> 제0조(단체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 유 : 양봉관련단체 육성을 통한 양봉산업 발전 추진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8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지만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축산정책과 지방수의주사 홍현표(054-880-3417)

참 고 자 료

1. 비용추계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안 제8조) 경북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등은 해당 과에서 수립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 결과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될 경우, 2021년도에 10백만원 소요되며, 향후 5년간 5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50	10	10	10	10	10
수정 조례안 제8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 교육, 지도	50	10	10	10	10	10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양봉농가 교육, 지도(수정안 -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정 조례안 제8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 교육, 지도	50	10	10	10	10	10

- 비용 세부기준

☐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 10백만원

- 내용 : 양봉교육, 지도
- 금액산출 : 10백만원

[산출식 : 양봉교육 5백만원 = 10백만원/년×50%

한봉교육 5백만원 = 10백만원/년×50%]

4.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관련 도비 예산(2016~202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합 계	742	570	600	900	900	
꿀벌 화분 지원사업	259	260	274	313	313	제8조제3항
꿀벌 면역증가제 지원	61	—	—	—	—	”
양봉 자동탈봉기 지원사업	53	—	—	—	—	제8조제1항
채밀기 지원사업	108	108	108	67	66	제8조제5항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08	141	141	92	92	제8조제1항
양봉(개량) 벌통 지원사업	92	—	—	324	297	제8조제2항
토종벌 종보전 사업	61	61	61	90	120	제8조제4항
토종벌 벌통 지원사업	—	—	16	14	12	”

※ 사업명 및 예산금액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외 2건)**

1. 관련 : 건축디자인과-14983(2020.8.5.)호, 축산정책과-7097(2020.8.5.)호, 농업정책과-9837(2020.8.6.)호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 명	검 토 의 건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7.3.21. 시행)에 따라 해당 조문에서 규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한 결과, 안 제8조(양봉 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기존 사업(20년 기준, 5개 사업, 도비 9억) 외에 신규 사업이(교육)한건임을 전제할 때 향후 5년간 50백만원*이나 ◦ 향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비의 지속적인 확보 등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 제6조의2(지원범위)는 의안의 내용이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범위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할 것이나, ◦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추가로 재정 소요가 발생할 시에는,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한 국비 확보 방안,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끝.

예 산 담 당 시 관 청 찬

수신자 건축디자인과장, 축산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주무관 김정윤 예산총괄팀장 이상현 예산담당관 전결 2020. 8. 7.
서정찬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0110 (2020. 8. 7.) 접수 건축디자인과-15165 (2020. 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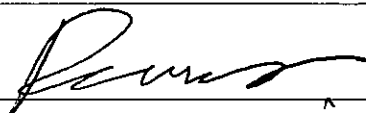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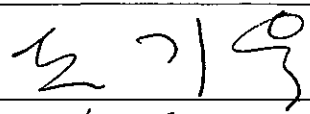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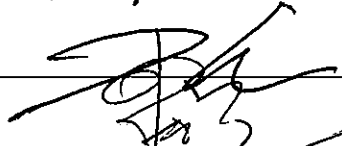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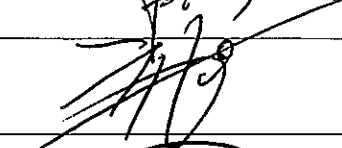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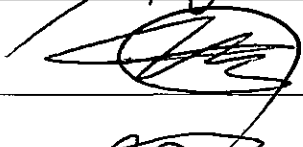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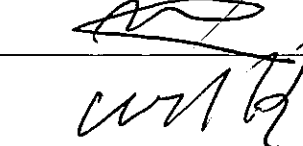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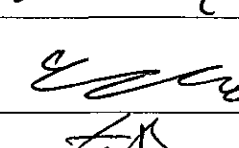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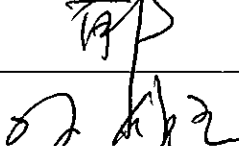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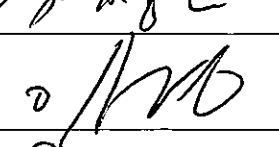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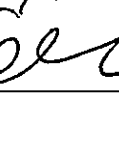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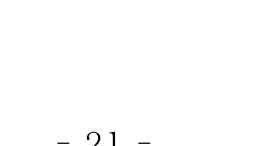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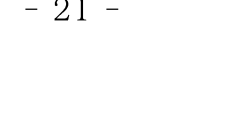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89 / kjy0102@korea.kr / 비공개(5)

"생활 속 거리두기, 거리를 두면 안전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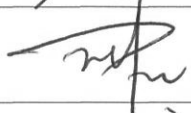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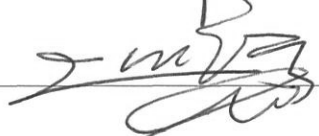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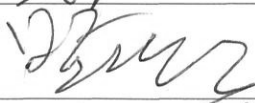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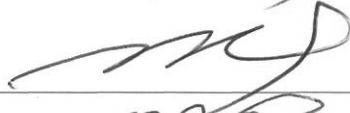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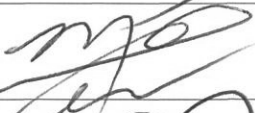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방 우 봉		
이관현		
노 기 욱		
박 정 현		
김 현 우		
김병직		
이영대		
이희철		
박 수 아		
나 기 보		
곽 영 화		
송 창 우		
김 상 조		
이 두 민		
이진석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박 용 신		
이 종 역		
오 씨 현		
이 현 의		
고 우 현		
유 동 인		
김 상 역		
박 재 현		
김 지 욱		
홍 하 근		
박 만 구		
이 칠 구		
정 영 권		
김 하 역		
김 상 기		